	<b>규정</b>	문서번호	TWP-A508
		제정일자	2012. 05. 25.
	<b>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</b>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개정번호	2


## 목 차

- 제1조(목적)
- 제2조(정의)
- 제3조(장애학생에 대한 배려)
- 제4조(적용범위)
- 제5조(교수·학습지원)
- 제6조(대학생활 지원)
- 제7조(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)
- 제8조(회의)
- 제9조(위원회 사무)
- 제10조(장애학생지원센터)
- 제11조(지원요청)
- 제12조(심사청구)
- 제13조(관련문서)
- 부칙

작성부서	<b>학생취업처</b>	제정일자	2012. 05. 25.
------	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승 인
		사무처장	기획처장	학생취업처장	교무처장	
직 책	담 당					
서 명						
일 자						



	<b>규정</b>	문서번호	TWP-A508
		제정일자	2012. 05. 25.
	<b>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</b>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개정번호	2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정당한 편의제공 의무) 및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2조(학칙 등의 작성)의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·학습 환경을 제공하고,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장애”라 함은 교수·학습활동 및 대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기관의 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.
- ② “장애학생”이라 함은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(장애인 등록증 소지자)된 학생을 말한다.
- ③ “교육·복지”라 함은 장애학생의 교수·학습 환경의 개선 및 대학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.

**제3조(장애학생에 대한 배려)** 대학생활 및 후생복지 지원에 있어서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에서 수학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.

**제5조(교수·학습지원)** 교수·학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수강신청 도우미 제공 등 수강신청 지원
2. 수업지원 도우미 연계 등 학습지원
3. 기타 장애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


**제6조(대학생활 지원)** 장애학생의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전공활동 등의 대학생활 지원
2. 장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, 개인상담
3. 진로상담, 취업준비 지원 등의 진로지원
4. 기타 대학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

**제7조(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)** ①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위원장이 되며, 당연직 위원으로 교무처장, **학생취업처장**, 사무처장, **입학홍보처장**, 총학생회 후생복지부장이 된다.<2018.02.19.>

	<b>규정</b>	문서번호	TWP-A508
		제정일자	2012. 05. 25.
	<b>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</b>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개정번호	2

④ 위촉위원은 교직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애학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
2. 장애학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
3.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에 관한 사항
4. 장애학생의 진로 개발에 관한 사항
5. 장애학생 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6. 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련된 제반 사항

**제8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9조(위원회 사무)** 위원회의 사무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한다.

**제10조(장애학생지원센터)** ①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
2. 교직원, 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
3. 장애학생 교육·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등 장애학생에 관련된 사항


③ 장애학생지원부서의 총괄책임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으로 한다.

**제11조(지원요청)** ①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는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지원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.

②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심사청구)** ①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는 제11조 제2항에 대한 결정과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심사청구를 원하는 경우에는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호 서식

	<b>규정</b>		문서번호	TWP-A508
			제정일자	2012. 05. 25.
	<b>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</b>	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	개정번호	2

의 심사청구서를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제출하며,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위원회에 심사청구사항에 대한 심사·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하여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관련문서)** 이 규정의 관련문서는 다음과 같다.

1.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2.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3.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

#### 부칙

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「정관」 및 「직제규정」에서 “장애학생지원센터”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